

## 정 관

제 정: 2001 . 2. 1  
개 정: 2002.11.11  
개 정: 2006. 12. 7  
개 정: 2007. 6. 15  
개 정: 2009. 3. 26  
개 정: 2010. 4. 12  
개 정: 2010. 7. 1  
개 정: 2012. 2. 14  
개 정: 2012. 10. 8  
개 정: 2016. 10. 26  
개 정: 2024. 10. 08  
개 정: 2025. 5. 13

##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라 하며(이하 '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 Ltd.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판매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3호 및 2항)
2. 투자자문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4호)
3. 투자일임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5호)
4. 콜거래업무
5. 어음매입업무
6.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허가 취득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을 필한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이백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십만주권, 일백만주권의 10종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다른 권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 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 금액이 6백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 금액이 6백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

**제23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회일 3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제출 서면은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 공시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1조 (이사의 수 및 구분)**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분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다만,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등)**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의 3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1항의 위원회 외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④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 구성과 위원회의 소집, 권한 및 기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0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

⑧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3조 (사외이사)**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소인원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 기타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들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본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본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단,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한다.

⑨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Audit Committee Terms of Reference)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위원회의 보고의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7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계 산

**제49조 (사업 연도)**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 연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액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 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 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제54조 (언어)**

이 정관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사업 연도)** 회사의 제1사업 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4사업 연도) 회사의 제14사업 연도는 2013년 4월1일로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1. 정관의 변경
2. 경영목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